심 사 보 고 서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심 사 보 고 서

의안 번호	1020

2022. 3. 17.(목)
교 육 위 원 회

1. 심사경과

가. 발 의 자: 임동현 의원 등 7인

나. 발의일자: 2022년 3월 8일

다. 회부일자: 2022년 3월 10일

라. 상정일자: 2022년 3월 17일

(제398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교육위원회)

마. 주요내용

○ 제안설명, 검토보고, 질의답변, 심사의결(원안가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임동현 의원)

가. 제안이유

○ 다양한 진로활동이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현행 조례의 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 신설(안 제8조)

○ 협의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개정(안 제11조 ~ 안 제13조)

3. 검토보고 요지

(수석전문위원 서성범)

가. 조례 개정이유

○ 본 개정 조례안은 학교 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 전용 공간으로 활용할 진로활동실 설치에 관한 사항을 신설하고, 충청북도진로교육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문구 및 용어를 정비하고자 하는 것으로,

○ 급변하는 사회 환경에 맞춰 단위 학교별로 학생들에게 최신의 진로·진학 정보제공과 학생 맞춤형 진로·진학 지도가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진로교육 전용 환경조성이 안정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한다는 측면에서 개정 필요성이 인정됨.

나. 주요내용

○ 안 제8조의 진로활동실 설치 규정은 각 학교에서 진로교육, 진로탐색을 위한 각종 검사 및 상담, 진로 정보 제공 등 진로 관련 교육활동이 통합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진로교육 전용공간을 마련함으로써 학교 내 진로교육 및 진로지도의 체계화와 전문성 강화, 실효성 있는 교육적 효과를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

○ 다만, 진로활동실 설치 시 학교 내 공간 확보와 투입되는 시설 등 학교별 특성에 맞는 공간 확보와 구성, 진로활동실 활용 계획 수립 등에 따라 진로활동실 설치 유형(신축 또는 환경개선)과 예산집행이 합리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세부 사업추진 계획과 체계적인 시행에 대한 세심한 검토가 필요하며, 진로활동실이 미설치된 24개 학교의 추진이 차질 없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실질적인 예산확보와 적극적인 시행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됨.

충청북도 내 진로활동실 설치 현황(2022. 3. 기준)

(단위:개)

구분	진로활동실 설치 대상학교 수	진로활동실 설치 학교 수	진로활동실 미설치 학교 수
중	126	111	16
고	84	75	8
소계	210	186	24

※ 자료제공: 충청북도교육청 학교혁신과(2022. 3.)

○ 안 제11조부터 제13조에서 충청북도진로교육협의회(도협의회) 의장과 부의장을 각각 위원장과 부위원장으로, 개의(開議)하고를 개최하고로 변경하는 등 도협의회 구성 및 운영과 관련된 일부 용어 및 문구를 정비한 것은 현행 조례에 따른 도협의회 운영상에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하고 알기 쉬운 법령 기준을 준수하여 개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

다. 종합의견

○ 본 조례 개정안은 개정 취지와 필요성 및 실효성이 인정되고, 개정 주요 내용과 구성 체계가 상위법령에 위반되는 사항 없고, 「법령

입안 및 심사기준」과 「알기 쉬운 법령 정비기준」 및 집행부 협의와 조례안 예고 등의 입법절차를 준수하여 전체적으로 타당한 조례 개정이라 판단됨.

4. 질의 및 답변요지: “생 략”

5. 토 론 요 지: “생 략”

6. 심 사 결 과: “원안가결”

7. 소 수 의 견 요 지: “없 음”

8. 기타 필요한 사항: “없 음”

9. 심사보고서 첨부서류:

○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4조제2항 중 “학교의 장은”을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으로 한다.

제6조와 제7조제1항 중 “학교의 장”을 “학교장”으로 한다.

제8조부터 제16조까지를 각각 제9조부터 제17조까지로 하고, 제8조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8조(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 학교장이 별도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1조(종전의 제10조)제2항 중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으로,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를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로 하고, 같은 조 제4항 중 “의장은”을 “위원장은”으로, “부의장”을 “부위원장”으로 한다.

제12조(종전의 제11조)제4호 중 “의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13조(종전의 제12조)제1항 중 “2회”를 “1회”로, “의장이 필요하다고”를 “위원장이 필요하다고”로, “의장이 소집한다”를 “위원장이 소집한다”로 하고, 같은 조 제2항 중 “개의(開議)하고”를 “개최하고”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생략) ②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각급 학교진로교육운영계획을 연도별로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제4조(시행계획 수립) ① (현행과 같음) ② 학교의 장(이하 “학교장”이라 한다)은 ----------.
제6조(진로 심리검사) 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초・중・고등학교 학생을 대상으로 1회 이상 진로심리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진로 심리검사) 학교장은----------.
제7조(진로상담) ① 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는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③ (생 략)	제7조(진로상담) ① 학교장은----------. ②・③ (현행과 같음)
<신 설>	제8조(진로활동실) ① 교육감은 진로정보의 제공, 진로상담, 진로수업 등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학교에 진로활동실 설치를 지원할 수 있다. ② 진로활동실이 설치되지 않은 학교의 경우에는 학교장이 별도

	의 공간을 확보하여 진로교육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8조·제9조 (생 략)	제9조·제10조 (현행 제8조 및 제9조와 같음)
제10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생 략)	제11조(충청북도 진로교육협의회 설치) ① (현행과 같음)
② 도협의회는 의장, 부의장 각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 특정 성(性)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해서는 아니 된다.	② -------- 위원장 1명, 부위원장 1명 ----------, 위촉진 위원의 경우에는「양성평등기본법」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③ (생 략)	③ (현행과 같음)
④ 협의회의 의장은 교육국장이 되고, 부의장은 위원 중에 호선한다.	④ ------ 위원장은 ------ ---부위원장----------.
⑤·⑥ (생 략)	⑤·⑥ (현행과 같음)
제11조(도협의회 기능) 도협의회의 기능은 다음 각 호와 같다.	제12조(도협의회 기능) ----------.
1. ~ 3. (생 략)	1. ~ 3. (현행과 같음)
4. 그 밖에 교육감 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4. ---------- 위원장----------
제12조(도협의회 회의) ① 도협의회의 회의는 연 2회 이상 정기회의를 개최하고, 교육감 또는	제13조(도협의회 회의) ① ---------- 1회 ---------- 위원장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나, 재적위원 3분의 1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의장이 소집한다. ② 협의회의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開議)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생 략) 제13조 ~ 제16조 (생 략)	이 필요하다고 ---------- ---------- - 위원장이 소집한다. ② ---------- ---------- 개최하고-------- ---------- -. ③ (현행과 같음) 제14조 ~ 제17조 (현행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와 같음)

관 계 법 령

❒ 진로교육법

[시행 2021. 3. 23.] [법률 제17954호, 2021. 3. 23., 타법개정]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1. 3. 23.>

1. “진로교육”이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등이 학생에게 자신의 소질과 적성을 바탕으로 직업 세계를 이해하고 자신의 진로를 탐색·설계할 수 있도록 학교와 지역사회의 협력을 통하여 진로수업, 진로심리검사, 진로상담, 진로정보 제공, 진로체험, 취업지원 등을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2. “진로상담”이란 학생에게 진로정보를 제공하고 진로에 관한 조언과 지도 등을 하는 활동(온라인으로 하는 활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3. “진로체험”이란 학생이 직업 현장을 방문하여 직업인과의 대화, 견학 및 체험을 하는 직업체험과, 진로캠프·진로특강 등 학교 내외의 진로교육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활동을 말한다.
4. “진로정보”란 학생이 진로를 선택할 때 필요한 정보로 개인에 대한 정보, 직업에 대한 정보, 노동시장을 포함한 사회환경에 대한 정보 등을 말한다.
5. “수업”이란 「초·중등교육법」 제24조에 따른 수업을 말한다.

제4조(진로교육의 기본방향) ① 진로교육은 변화하는 직업세계와 평생학습사회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스스로 진로를 개척하고 지속적으로 개발해 나갈 수 있는 진로개발역량의 함양을 목표로 한다.

② 모든 학생은 발달 단계 및 개인의 소질과 적성에 맞는 진로교육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③ 진로교육은 학생의 참여와 직업에 대한 체험을 바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④ 진로교육은 국가 및 지역사회의 협력과 참여 속에 다양한 사회적 기반을 활용하여 이루어져야 한다. <개정 2021. 3. 23.>

제10조(진로심리검사) ① 초 · 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이 소질과 적성을 이해하고 진로상담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진로에 관한 심리검사(이하 “진로심리검사” 라 한다)를 제공할 수 있다.

② 교육부장관은 학생의 발달 단계에 맞는 진로심리검사의 운영 기준을 제시할 수 있다.

제11조(진로상담) ① 초 · 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 탐색 및 선택을 지원할 수 있도록 진로상담을 제공하여야 한다.

② 초 · 중등학교의 장은 학생의 진로에 관하여 해당 학생의 보호자로부터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12조(진로체험 교육과정 편성 · 운영 등) ① 교육부장관과 교육감은 학생에게 다양한 진로체험의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편성하고 운영하여야 한다.

② 학교 교육과정 운영에 따른 진로체험 시간은 수업시간으로 본다.

③ 진로체험 교육과정의 편성 · 운영 및 수업 인정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 ① 「초 · 중등교육법」 제24조에도 불구하고 교육감은 특정 학년 또는 학기를 정하여 진로체험 교육과정을 집중적으로 운영하는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를 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진로교육 집중학년 · 학기제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충청북도교육청 진로교육 진흥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비용추계서

1. 제정수반요인

❍ 조례 개정안에 따라 학교 진로교육 활성화 및 학생 진로지도 내실화를 위해 학교 내 진로전용 공간인 진로활동실 설치에 따른 비용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2. 비용 추계결과

가. 추계 결과

(단위: 천원)

진로활동실 구축 비용 추계	연도별 시설비 추계					
산출기초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2026년	**합계**
1. 진로활동실 신규 구축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 학교 교육과정 운영 상황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

나. 산출결과

구 분		1차년도 (2022년)	2차년도 (2023년)	3차년도 (2024년)	4차년도 (2025년)	5차년도 (2026년)	계
세 입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자체수입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세 출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진로활동실 구축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재원 조달							
의존 재원	소 계						0
	국고보조금						0
	보통교부금						0
	특별교부금						0
자체 수입	소 계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자체수입	60,000	120,000	120,000	180,000	180,000	660,000
지방채							0
기 금							0
기 타 (차입금, 민자, 예비비 등)							0